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1945호 2021. 5.13.(목)

힐링노원



노원구 전경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힐링도시노원→구정홍보→노원구보)>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24 / FAX. 2116-4618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한 주 석
전 화 : 02-2116-3424

차 례

조 례

○ 제149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149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제150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제150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 23
○ 제150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32
○ 제150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제15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37
○ 제150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제150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제150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 제150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48
○ 제150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제15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 제151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3
○ 제151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79
○ 제151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제151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86
○ 제15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89
○ 제151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91

규 칙

○ 제8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93

고 시

○ 제2021-76호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01

공 고

○ 제2021-66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102
○ 제2021-676호 수렵면허 갱신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안내문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05
○ 제2021-683호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 107

조 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9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없이”를 “관계 없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관계 없이----------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 략)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현 행	개 정 안
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 ---------- ---------- -- 범위----------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 3명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생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 가입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 따라 ---------- ---------- --.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해당 ---------- 별지 제3호서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생략)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② ---------- ---------- ---------- ----------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생략)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 범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 않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③ ---------- 해당 연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9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법관·교육자”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로, “사람 중”을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

한 사항.”을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원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8조의 2”를 “법 제8조의2”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 서울 특별시 노원구 공직 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 특별시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제2조(구성) ① ---- ---------- ---------- ---------- ---------- ---------- 7명---------- ---------- ---------- ---------- ----------	제2조(구성) ① ---- ---------- ---------- ---------- ---------- ---------- 7명----------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 ---------- ---------- --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1. ----------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② ---------- ---------- ---------- ---------- ---.	② ---------- ---------- ----------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 5명----- ---------- -------.	1. ---------- ----- 5명-----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능) ① (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② ----------.
1. 노원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1. ----------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3. 노원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노원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2. 법 제8조의2----------	2. 법 제8조의2----------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란”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란”으로, “관리 등”을 “관리, 재난재해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운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통합운영센터의 역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합운영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게”를 “제기”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불법”을 “불복”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통합관제센터의”를 “통합운영센터의”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제2조(용어의 정의) ---------- ----------

현 행	개 정 안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3. ----------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 통합운영센터----------.
6.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란 ---------- 관리, 재난재해 등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	제3조(적용범위) ----------

현 행	개 정 안
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 ---------- ---------- ---------- ----------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 ---------- ---------- ----- 통합운영센터-------- ---------- ---------- ----------.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② ---------- ---------- ----------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운영센터 ---------- ---------- ----------.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 ----------

현 행	개 정 안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 통합운영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3장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운영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운영센터의 구축) ① ---------- 통합운영센터--------.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통합운영센터----------.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

현 행	개 정 안
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통합운영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관제의 범위) ① ----- 통합운영센터----------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통합운영센터의 역할) ① 통합운영센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운영센터---------- ---------- ---------- ----------.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	제15조(통합운영센터의 운영) ① ------ 통합운영센터 -------

현 행	개 정 안
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원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 ---------- ----------.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 통합운영센터---------- ---------- ---------- ----------.
제16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 통합운영센터 운영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자 통제 등) ① ---------- 통합운영센터---------- ---------- ---------- ----------.
② 일반인이 통합관제센터를 견학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통합운영센터----------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게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 ---- 제기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열람 등의 요청) ①·② (생 략)	제22조(열람 등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법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 ---------- ----------. ---------- ---------- 불복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5장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2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	제2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통합운영센터의 -- ----------

현 행	개 정 안
호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방범용 CCTV의 설치가 10개 미만이거나 긴급한 설치를 요하는 경우 노원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 통합운영센터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삭 제	제31조(위원회 운영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 통합운영센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와 비상 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감독권을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노원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계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전기시설									

[별표 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기계시설	전기시설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15명”을 “1,6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86명”을 “1,59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노원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609	-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5	2	13	19
6급 이하 계	1,530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8	-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86명
2. (생 략)
[별표 3]
노원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td><td>제2조(정원의 총수) ---------- ---------- ------- 1,619명---------- ----------.
1. ---------- 1,590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노원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td></tr>
</table>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605	-			
2급	1	1			
4급	8	6	1	1	
5급	68	36	2	11	19
6급 이하 계	1,527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8	-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609	-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5	2	13	19
6급 이하 계	1,530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

업장이 노원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 ---------- ---------- ---------- ---------- ----------.
제4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4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 ---------- ----------

현 행	개 정 안
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노원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 사용의 의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접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 직접 사용 ---------- 건축물 및 주택----------.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안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 ---------- 사업소분----------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사전점검”이란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점검요원”이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및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중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점검) ①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은 사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게 유지관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 등에게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행강제금)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0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이란”을 ““아동・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로, “아동의”를 “아동・청소년의”로,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아동에게”를 “아동・청소년에게”로 한다.

제3조 중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동은 차별받지”를 “아동・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유무・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에게”를 “아동・청소년에게”로, “아동의”를 “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아동은”을 각각 “아동・청소년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친화도시”를 각각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아동의 참여)”를 “(아동・청소년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에게”를 “아동・청소년에게”로,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아동권리 전담조직)”을 “(아동・청소년권리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의”를 “아동・청소년의”로, “아동권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를 “아동・청소년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8조의 제목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청소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에게”를 “아동・청소년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청소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 및 아동관련업무”를 “아동・청소년 및 관련업무”로,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동관련 예산)”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을”을 “아동・청소년을”으로,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아동의 권리 홍보 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의 권리를 이해”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한다”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및 그의 양육자, 아동・청소년 관계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의 제목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를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의”를 “아동・청소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권장하며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권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한다.

④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2.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기관)대표 및 관계자
3. 아동권리 옹호 및 복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장(위원)

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3.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⑥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동”을 각각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을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동”을 각각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동친화도시”를 각각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아동업무”를 “아동・청소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동분야 또는

도시공간”을 “아동・청소년 분야 또는 도시 공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해당직위”를 “해당 직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때에는 부위원장”을 “때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때에”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 아동·청소년이 ---------- ---------- ----------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의 만18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1. “아동·청소년”이란 ------ ---------- ----------.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아동·청소년의 ---------- 아동·청소년이 ---------- ----------.

현 행	개 정 안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 ---------- --- 아동·청소년에게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아동·청소년이 ------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
제4조(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 -----.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아동·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유무·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 ---------- 아동·청소년의 ---------- --.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문	3. 아동·청소년은----------

현 행	개 정 안
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4.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신 설>	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③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현 행	개 정 안
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 ① ---------- 아동·청소년에게 -- 아동·청소년이 ---------- ---------- ---------- ----------.
<신 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권리 전담조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권리 전담부서) ① ---------- -- 아동·청소년의 ---------- ------ 아동·청소년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현 행	개 정 안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8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영향평가) ① ---------- 아동·청소년에게---------- ---------- ---. ② 아동·청소년영향평가---- ---------- ---------- ----.
제9조(지역아동 실태조사) 구청장은 주요정책 입안자, 아동 및 아	제9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 ---------- 아동·청소

현 행	개 정 안
동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년 및 관련업무 ---------- ----------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관련 예산) -- 아동·청소년을 ---------- ----- 아동·청소년-------- ----------.
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종사자 등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및 그의 양육자, 아동·청소년 관계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① -- 아동·청소년의---------- ---------- ---.
② 구청장은 아동이 주도하는 비정부 기구 활동을 권장하며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아동·청소년이 -- ---------- 권장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권리

현 행	개 정 안
	증진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한다.
<신 설>	④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2.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기관)대표 및 관계자 3. 아동권리 옹호 및 복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장(위원)
<신 설>	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3.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⑥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⑦ 구청장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청소년----------.
1.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1. --- 아동·청소년----------
2.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2. 아동·청소년----------
3.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유해환경 개선	3. 아동·청소년 ----------
4.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	4. 아동·청소년----------

현 행	개 정 안
보	--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5. 아동・청소년---------- --
제14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 ---------- ---------- ---------- ---------- -------.
1. 아동 보행 편의	1. 아동・청소년 ---------- ----------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아동・청소년---------- ----------
제1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제16조(기능) ---------- ---------- ---.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 --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현 행	개 정 안
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5. 제8조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아동·청소년 업무----------

현 행	개 정 안
5.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5. 아동·청소년----------
6. 아동분야 또는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청소년 분야 또는 도시 공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기) ① ----------. ---------- 해당 직위----------.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때는 부위원장----------.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회의) ① ----------

현 행	개 정 안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때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경우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④ ---------- ----------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 ---------.
<신 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현 행	개 정 안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 ---------- ---------- ---------- 해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 ---------- 해촉--------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2조(간사) ① ---------- ----------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및 창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2. 고령자경비원 등에 대한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 사업 지원

3.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4. 고령자경비원 등의 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제4조(적용대상) ①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안정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

②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는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단지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상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경비원 등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동복지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또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지원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등의 평균연봉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

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제7조제4항제1호의 경우 지원신청·결정·정산 및 보고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서식의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새롭게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 근로여건 개선 사업 등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보고 등) ①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을 완료하면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고용지원금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에 따라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아 파 트 단 지 명			세대수/동수	
	주 소 (연락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	

경비현황	경비원수	명	운영형태	직영/위탁/기타 ( )	근무시간	시간/1인

신 청 내 용

고용보조금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

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녹화 및 목공예 편의시설을”을 “도시녹화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녹화 및 목공예 편의시설(이하 “도시녹화 등”이라 한다)”을 “도시녹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도시녹화 등”을 “도시녹화”로, “「주택법」 및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하고,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를 “노유자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녹화 등 지원)”을 “(녹화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녹화 등 사업을 위하여”를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사항”을 “녹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병·해충방제”를 “수목병·해충방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6호) 중 “녹화전문가의”를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위험수목 제거

4.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목공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및 목공예 편의시설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녹화를 ----------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및 목공예 편의시설(이하 “도시녹화 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녹화 등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지원---------- ----------. ---------- ---------- ---------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등 지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

현 행	개 정 안
원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하고,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 등으로 한다.	------- 「건축법」 -------- ---------- ----- 노유자시설 --------- ---------- ---------- ---

현 행	개 정 안
8. (생 략)	5.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녹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1.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 등 기념식수의 식수장소 제공	
2. 나무 심는 날 지정	
제5조의2(목재펠릿연료 가격결정)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생산된 목재펠릿연료의 가격을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결정·고시한다.	<삭 제>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목공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동물과 공존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 명칭은 “댕댕하우스”로 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사무실, 놀이실, 보호실, 교육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운영제반사항에 관한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대상 동물) 입장 대상 동물은 소유자등(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구청장은 위탁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1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노원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9	972	29	164	45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609	964	27	164	454
직급 직렬 별	2급 소계	1	1			
	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행정	4	3	1		
	행정·기술	3	3			
	기술	1			1	
	5급 소계	69	35	2	13	19
	행정	45	25	2		18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	2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2	
	의무	8			8	
	의무·약무	2			2	
	시설	4	4			

기 관 / 별 /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95**	**207**	**5**	**30**	**53**
직급 직렬 별	행정	181	125	5	12	39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10	3		1	6
	행정·공업	2	2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녹지	5	5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수의·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시설	5	5			
	방호	1	1			
	세무	12	12			
	전산	1	1			
	사회복지	17	9			8
	공업	6	6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2	2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보건진료	2			2	
	시설	20	20			
	위생	1	1			
	운전	4	4			
	사무운영(필기)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 직렬별	**7급 소계**	**489**	**312**	**10**	**42**	**125**
	행정	234	136	7	8	83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	33	33			
	전산	3	3			
	사회복지	75	32		1	42
	속기	3		3		
	방호	5	5			
	공업	16	16			
	농업·수의	1			1	
	녹지	7	7			
	녹지·시설	1	1			
	보건	7	1		6	
	의료기술(임상병리)	4			4	
	의료기술(방사선)	2			2	
	약무	3			3	
	간호	17			17	
	환경	2	2			
	시설	42	42			
	방송통신	3	3			
	위생	0	0			
	시설관리	1	1			
	운전	20	20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필기)	7	7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8급 소계**	**534**	**274**	**5**	**66**	**189**
	행정	223	124	3	15	81
	행정·시설	2	1	1		
	세무	19	19			
	전산	3	3			
	사회복지	144	53		2	89
	방호	5	4	1		
	공업	9	9			
	공업·시설	1	1			
	녹지	5	5			
	녹지·시설	2	2			
	보건	5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임상병리)	1			1	
	의료기술(방사선)	1			1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의료기술(치과위생)	2			2	
	간호	58	1		38	19
	환경	1	1			
	시설	23	23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6	6			
	운전	17	16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필기)	1	1			
	사무운영(사서)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 직렬별	**9급 소계**	**212**	**128**	**4**	**12**	**68**
	행정	70	37	2	3	28
	세무	9	9			
	전산	1	1			
	사회복지	60	20			40
	방호	1			1	
	공업	10	10			
	녹지	6	6			
	보건	3			3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환경	2	2			
	시설	20	20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0	10			
	운전	15	10	2	3	
	전문경력관 소계	**1**	**1**			
	나군 소계	1	1			
	화생방관리원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별정직 계		9	7	2		
직급 직렬별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7급 상당 소계	4	4			
	비서	4	4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9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5	971	29	161	45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605	963	27	161	454
2급 소계	1	1			
(생 략)					
4급 소계	8	6	1	1	
(생 략)					
5급 소계	68	36	2	11	19
행정	46	26	2		18
의무	6			6	
6급 소계	293	203	5	32	53
사회복지	14	6			8
보건진료	4			4	
시설	19	19			
7급 소계	490	313	10	42	125
보건	8	2		6	
8급 소계	534	277	5	63	189
사회복지	142	53			89
방호	6	5	1		
간호	57	1		37	19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	2	2			
9급 소계	210	126	4	12	68
행정	69	36	2	3	28
공업	11	11			
시설	21	21			
시설관리	7	7			
전문경력관 소계	1	1			
(생 략)					
별정직 계	9	7	2		
(생 략)					
6급상당 소계	2	2			
비서	2	2			
7급상당 소계	4	3	1		
비서	4	3	1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19	972	29	164	45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609	964	27	164	454
2급 소계	1	1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8	6	1	1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69	35	2	13	19
행정	45	25	2		18
의무	8			8	
6급 소계	295	207	5	30	53
사회복지	17	9			8
보건진료	2			2	
시설	20	20			
7급 소계	489	312	10	42	125
보건	7	1		6	
8급 소계	534	274	5	66	189
사회복지	144	53		2	89
방호	5	4	1		
간호	58	1		38	19
<삭 제>	<삭 제>				
기계운영(기계)	1	1			
9급 소계	212	128	4	12	68
행정	70	37	2	3	28
공업	10	10			
시설	20	20			
시설관리	10	10			
전문경력관 소계	1	1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9	7	2		
(현행과 같음)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7급상당 소계	4	4			
비서	4	4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76호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재건축사업
   나. 명칭 :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자산신탁㈜
   나. 법인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규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나. 대지면적 : 33,854.6㎡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1.05.
   나. 준공예정일 : 2027.04.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66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8호(2018. 4. 19.)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42호(2019. 3. 2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97호(2019. 8. 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6호(2021. 2. 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도로) 사업[사업명 :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니,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번지 외 29필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나. 사업명칭 :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3. 사업면적 및 규모 (면적변경)
   가. 사업면적
      - 체육시설 : (당초) 34,760㎡ → (변경) 34,807㎡ (증 47㎡)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상계동 132-1	구거	1,517	증) 47	1,564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유자 변경없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경미한 면적 변경 (지구계 변경없음)

- 도 로 : 806㎡ (변경없음)

나. 시설종류

-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도로
- 주차장, 관리동, 여가녹지공간 등

4. 사업 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2019.3.28.(실시계획 인가일) ~ 2022.2.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림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09:00~18:00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문화체육과(☎ 02-2116-0621)

다. 관계서류 : 게재 생략(관계서류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8. 공고방법 : 서울시보·노원구보 게재 및 구청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 토지이용계획 변경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5,566**	**증) 47**	**35,613**	**100.0**	**-**
체육시설	**34,760**	**증) 47**	**34,807**	**97.7**	**-**
축구장	6,045	-	6,045	17.0	-
야구장	8,482	-	8,482	23.8	-
테니스장	1,740	-	1,740	4.9	-
관리시설	-	-	-	-	축구장 하부 198㎡
주차장	2,009	-	2,009	5.6	-
녹지용지	16,484	증) 47	16,531	46.4	-
도로	**806**	**-**	**806**	**2.3**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676호

수렵면허 갱신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안내문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533(2021.04.09.)호 및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7834(2021.04.09.)호와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 및 수렵 강습 교육 진행을 고려하여 관내 수렵면허 소지자에게 갱신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1. 5. 13. ~ 2021. 5. 28.

2. 공고대상자(4명)

면허번호	성명	주소	반송사유
2015-*	정*환	서울툭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0, 10*동 70*호 (중계동, 대림**아파트)	폐문부재
2015-1*	최*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 10*동 150*호 (공릉동, 탑*빌아파트)	폐문부재
2016-*	송*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길 *4, 30*호 (공릉동, 초*빌라)	폐문부재
2016-1*	우*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9*길 *1, 20*동 120*호 (상계동, 상계*암*림아파트) *갱신기간 : 2021. 5. 28. ~ 2021. 12. 31.	수취인불명

3. 공 고 내 용 : 수렵면허 갱신관련 추가연장 안내문

○ 코로나 상황 및 수렵강습 교육 진행을 고려하여 수렵면허 갱신 기간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노원구청에 방문하여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갱신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2)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1.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3) 신청장소 : 노원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7번 창구)

4) 구비서류

① 신체검사서(일반신체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총포 소지허가증

- 신체검사서(일반+정신)는 총포 소지허가증(유효기간 내) 사본으로 갈음 가능
- 신체검사서(일반+정신)는 최근 1년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받아야 함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로 가능)
- 일반 신체검사서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수렵면허증 원본 및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이즈)

③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이수증에 한함)

※ 강습 일정은 야생생물관리협회(www.kowaps.or.kr/, ☎02-911-0000)에서 확인

④ 수수료 10,000원

5) 유의사항

① 면허 갱신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기간 만료일(2021.12.31.)까지 수렵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수렵 면허 담당(☎ 02-2116-3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683호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 도시재생과 (☎02-2116-391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 (☎02-943-1789)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4)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역

1) 사업의 명칭 :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43,886.00㎡
4) 사업시행자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강윤희)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토지이용계획

도 로(㎡)	공 원(㎡)	획 지(㎡)	합 계(㎡)
1,571	3,213	39,102	**43,886**

7) 건축계획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층)	동수(동)	건폐율(%)	용적률(%)	세대(소형)
6,967.49	173,007.77	지하4층/ 지상13~25층	15	17.82	249.67	1,070(66)

8) 주택규모별 공급계획

규 모	전용면적(㎡)	세대 수	비 고
임 대	33.9759	41	
	45.9366	20	
	59.9519	5	
	소 계	66	
분 양	33.9759	42	
	45.9366	17	
	59.9519	303	
	59.9789	161	
	59.4512	57	
	59.9751	13	
	84.6096	203	
	84.8261	144	
	84.6340	64	
	소 계	1,004	
합 계	**합 계**	**1,070**	

9)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10)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마. 공람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람시 코로나19확산방지 대책으로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